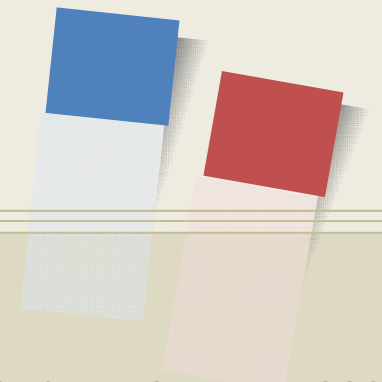
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



□ 법령의 시행일(2020년 1월 1일)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

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1]에 따른 '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'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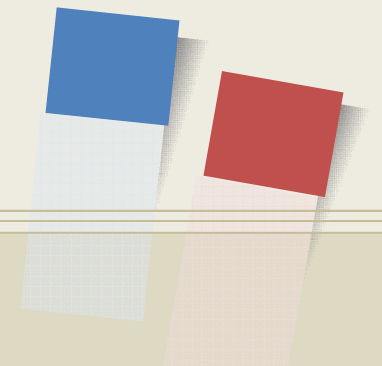
\* 변경 전 법령 기준: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,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

\* 사회복지전공 학과생이 시행일 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 
(현행 사회복지법은 학과기준이 아니고 교과목 기준임)

➤ 다만,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시행일 이후에 수강한다면 실습시간은 기존 법령에 따라 120시간 이상 이수하되,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함

(적용 예시 다음페이지 참조)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



## □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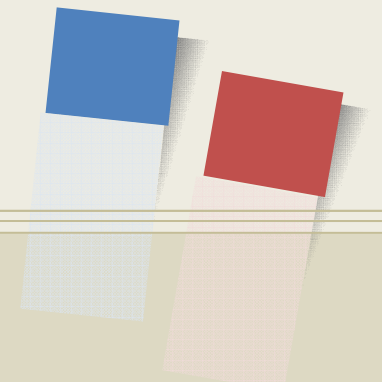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습시간	실습기관	실습세미나
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	120시간	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	-
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,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	120시간	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	-
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	160시간	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	30시간

### ➤ '수강하고 있는'은 교육기관의 해당교과목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됨

적용예시1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**2020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함(2019년도 사전실습 불인정)**

적용예시2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한 실습기관에서 기관실습 가능 **(교과목 개설기간이 2019년 12월 10일 ~ 2020년 2월 10일 경우 변경 전 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가능)**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교과목 및 추가되는 교과목



## □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

➢ 이수연도(시행일 이전, 시행일 이후)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

사회복지개론 → 사회복지학개론	사회복지법제 → 사회복지법제와 실천	사회복지발달사 → 사회복지역사
의료사회사업론 → 의료사회복지론	정신보건사회복지론 → 정신건강사회복지론	학교사회사업론 → 학교사회복지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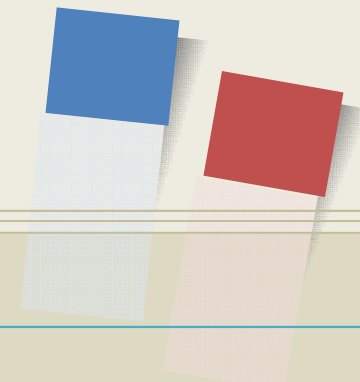
## □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

➢ **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**

가족상담 및 가족치료	국제사회복지론	복지국가론	빈곤론
사례관리론	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	사회복지와 인권	

적용예시1) 시행일 이후 '사회복지개론'을 이수할 경우 '사회복지학개론'으로 인정  
 적용예시2)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'가족상담 및 가족치료'를 이수한 경우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  
 적용예시3) 시행일 이전 신규 교과목(7개 과목)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다더라도 변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법령 적용  
 (변경된 법령 기준: 필수과목 10과목, 선택과목 7과목,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등등)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(기관실습)



## □ 기관실습 변경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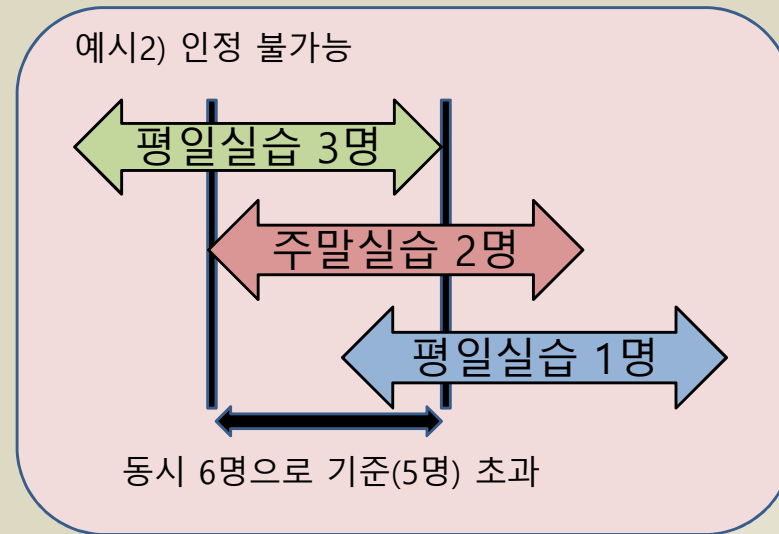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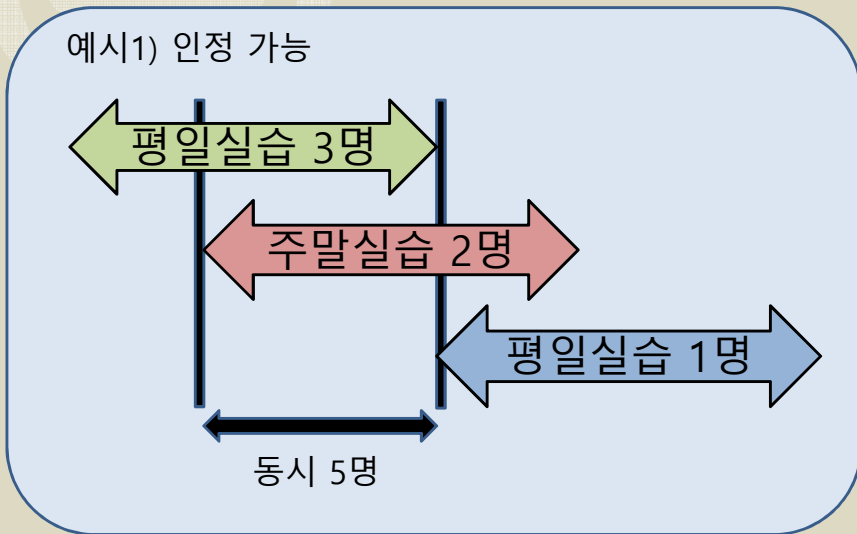
구분	기존	변경
실습시간	120시간 이상	160시간 이상
실습기관	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</li> <li>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</li> <li>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</li> </ul>
실습지도자	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</li> <li>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</li> </ul>

**보수교육 이란?)*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
**보수교육 적용기준)** 2020년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2019년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며, 매년 이수교육 이수 필수  
**2019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)** 2020년 상반기 유예기간(6월30일까지) 동안 개설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지도를 하여야 함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(기관실습)

## □ 기관실습의 운영

- 실습인원 :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**학생 수는 5명 이내**
- 실습시간 : **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,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**



※ 평일실습, 주말실습, 주간실습, 야간실습 등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,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(실습세미나)



## □ 실습세미나

-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음(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가능)
- 실시기준 : **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**,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
  - ※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**(주 1회 초과 할 수 없음)**
- 실습세미나 교수 기준 :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
  - ※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
  - ※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: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